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한 탐정산업의

공익적 역할 연구

김미옥*, 윤소빈**, 염건령***

한국범죄학연구소 연구위원*, 앨리스 컨설팅 HR 대표 자문위원**, 가톨릭대 행정대학원 교수***

A Study on the Public Interest Role of the Detective Industry for Music Copyright Protection

Kim Mi Ok*, Yun Sou Bin**, Yeom Keon Ryeong***

Senior Research, Korea Institute for Criminology*

Representative Advisor, Alice Consulting HR**

Professor, Graduate School of Public Administration,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요약 현대에 이르러 인터넷의 확산으로 인한 피해들이 매우 다양해지고 있다. 특히, 2008년 이후 K팝의 열풍으로 국내외 음악 시장의 다양해진 저작권 침해로 인한 피해는 인터넷 시장의 가장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그러나 계속 지능화되어 가는 이러한 범죄들을 해결하기 위한 경찰과 저작권 보호기관들의 인력은 부족한 상황이다. 따라서 공권력의 보완인력으로서 또, 음악저작권 침해 예방과 분쟁에서 피해자를 위한 합법적인 도움을 줄 수 있는 저작권 보호기관의 대체인력으로서 공익적 탐정의 역할을 찾아보려 한다. 이 연구를 위해 먼저 음악저작권의 개념과 유형, 공익 탐정의 개념, 음악저작권의 현황과 제도를 파악하고 보호기관의 제도운영 및 현황 분석과 문헌 고찰을 통하여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한 탐정의 역할들을 찾아 보았다. 본 연구결과를 통해 음악저작권 보호라는 공익적 차원에서의 전문탐정의 역할이 앞으로 탐정 산업발전을 성장시키는데 좋은 토양이 될 수 있기를 바란다.

주제어 K팝, 저작권 침해, 공익탐정, 대체인력, 산업발전

Abstract In modern times, damage caused by the spread of the Internet has become very diverse. In particular, due to the craze of K-pop since 2008, the damage caused by copyright infringement in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music markets has become the biggest problem in the Internet market. However, the manpower of the police and copyright protection agencies to solve these increasingly intelligent crimes is insufficient. Therefore, we are trying to find out the role of the public interest detective as a supplementary force for the public authority and as a substitute for the copyright protection agency that can provide legitimate help for victims in the prevention of music copyright infringement and disputes. For this study, first, the concept and types of music copyright, the concept of public interest detectives, the current status and system of music copyright were identified, and the role of detectives for music copyright protection was explored through system operation and status analysis of protection agencies and literature review. Through the results of this study, it is hoped that the role of a professional detective in the public interest dimension of music copyright protection can be a good soil for the development of the detective industry in the future.

Key Words K-pop, Copyright infringement, Public interest detective, Alternative manpower, Industrial development

Received 13 Jan 2023, Revised 20 Jan 2023

Accepted 27 Jan 2023

Corresponding Author: Yeom Keon Ryeong

(Catholic University of Korea)

Email: kicl2001@naver.com

ISSN: 2466-1139(Print)

ISSN: 2714-013X(Online)

© Industrial Promotion Institute.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1. 서론

지적재산권(知的財産權, intellectual property rights)은 인간의 지적 창작활동의 결과물로 얻어진 정신적 가치의 산물이며, 법이 부여하는 재산적 권리이다. 지적재산권은 크게 산업 분야, 신직업 분야, 문화예술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 문화예술 분야로서 지적재산권에 해당하는 저작권 특히, 음악저작권은 다른 재산권과는 달리 물리적 유형화가 힘들기 때문에 그 권리의 가치를 분명하게 측정하기가 어려운 특성을 가지고 있다.

특히 이 분야는 2008년 이후부터 K팝(Korean Pop)의 열풍으로 인한 음반 시장의 경제적 성장에 따른 음악저작권 침해 관련 불법 다운로드, 불법 스트리밍, 무단 공유, 디지털 음악 파일의 불법복제 등과 같은 부정적인 침해로 많은 법적 분쟁에 놓여 있는 상황이다(최혜경, 2022)[1].

피해자들은 법적 분쟁에서 공권력의 도움 외에 부족한 부분들을 스스로 해결하기 위해 수익자 부담원칙(benefit principle)에 의한 사적 기관으로서 탐정을 찾고 있다. 여기서 탐정은 수요자들에게 분쟁소송에 필요한 세부적이고 자세한 증거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는 서비스업의 형태를 의미한다(김용현, 2015)[2]. 그러나 아직 우리나라는 탐정제도에 관한 입법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탐정 활동에 대한 수요공급 체계가 원활하지 않은 상태이다. 이것은 헌법재판소의 확정판결에 의거하여 탐정업은 허용되었지만, 이를 제도적으로 뒷받침할 수 있는 법적 제도 구성이 아직까지 미비된 상태임을 의미한다.

따라서 탐정 활동이 법적으로 제한을 받고 있고 조사활동이 자유롭게 못하여 법적 테두리 안에서 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은 국내의 경우 심부름센터 명칭을 빙자한 불법적·음성적인 업소 등의 범죄 발생의 원인이 되어 이로 인한 탐정의 불법이라는 오명은 아직까지 벗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조상현, 2019)[3]. 앞으로 탐정의 사회적 필요성과 실체를 인정하고 이를 보다 효율적으로 국가가 관리하여 국민의 법률생활과 사회경제적 지위를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탐정제도 도입이 필요하다(하금석, 2022)[4]. 또한 탐정제도를 양성화하

고 나아가 탐정의 전문화를 위해서는 꾸준한 연구가 필요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탐정의 전문분야로서 탐정의 음악저작권 보호의 공익적 지원에 대한 역할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 연구를 위해 먼저 현 음악저작권 침해실태와 음악저작권 보호 기관들의 현행 체계가 가지고 있는 한계점 등을 파악하고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법으로 음악저작권 보호 및 탐정제도에 관한 각종 문헌과 인터넷 자료 등을 수집, 분석하여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한 탐정의 공익적 역할에 대한 연구를 탐색적으로 접근하였다.

2. 이론적 배경

2.1 탐정의 개념

역사 속에서 인류는 필요한 정보를 비밀리에 수집하려는 의도에 의해 정보제공자로서의 ‘탐정’이라는 직업을 만들어 내었다. 탐정의 기원은 영국에서 6세기경 상인들이 도난당한 재산범죄에서 그 재산을 되찾기 위한 목적으로 사람을 고용한 것이 그 기원이다. 이것은 지금의 탐정이란 용어로 발전하게 되었다(이도현, 2020)[5].

탐정이란, 의뢰인에게 사건조사에 관한 청탁을 받아 어렵고 은밀하게 숨겨진 정보들을 알아내어 그 정보들을 의뢰인에게 제공해 주는 대가로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받는 사람이다. ‘탐정’이라는 용어는 영미의 ‘Private Detective’ 또는 ‘Private Investigator’를 일본에서 ‘탐정(探偵)’으로 번역하여 그 개념이 우리나라에 전래된 것이다(노진거, 2019)[6]. 미국, 프랑스, 영국, 호주, 독일, 일본, 스페인 등 OECD 주요국가에서는 현재 탐정제도가 활발히 시행되고 있는 실정이다.

OECD 주요국가에서의 탐정제도는 공권력의 인력이 미치지 못하는 사건에 대해 수익자 부담 원칙에 의거하여 수익자의 침해를 구제하는 데에 유용한 제도로서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탐정의 긍정적인 영향에도 불구하고 OECD에 가입한 36개 회원국 중 유일하게 우리나라만 탐정제도를 아직 도입하지 않고 있었다. 하지만 헌법재판소의 탐정업 허용에 대한 판결로 인해 마지막으로 탐정업이 개방된 국가가 되었다.

시간이 갈수록 지능화되는 범죄의 다양한 피해로 인해 국민들 또는 피해자들이 스스로가 권익과 생명,

재산의 보호를 위해 경찰 공권력에 대한 의존을 넘어 스스로 해결하려는 보호책으로 탐정의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강영숙, 2008)[7]. 이러한 이유들로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 하순봉 의원의 탐정법률 발의안을 시작으로 탐정의 필요성과 제도 도입에 관한 주장들이 국회에서 계속 논의되고 있다(황요완, 2017)[8]. 또한 제 17대 국회부터 시작 되어진 국회 입법안 발의는 지금까지 10여 차례 국회의 공인 탐정제도에 관한 관련 법안 발의로 이어지고 있다(김영길, 2021)[9]. 또한 헌법 재판소 위헌 판결에 의한 2020년 8월 ‘신용정보법 개정’으로 탐정이란 용어를 공식적으로 쓸 수 있게 되었고 당당하게 탐정이란 이름으로 영업을 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은 앞으로 탐정 활성화가 기대되는 긍정적인 결과라고 볼 수 있다(박중화, 2011)[10].

탐정 산업 활성화의 기대는 탐정의 입법화로 인한 공권력과의 협력적 치안확대 효과 기대와 흥신소와 같은 유사불법탐정업체의 불법 활동 감소 및 경찰업무 경감으로 이어져 현재 변화해가는 사회기능의 다원화와 모든 영역의 전문화 속에서 다양해지는 사건, 사고 해결 전체에 이익이 되는 공익적 탐정의 기대로 변화해 갈 것으로 예상된다.

2.2 탐정의 공익적 지원

다양한 사건과 사고가 쏟아지고 있는 현실에서 경찰의 공권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많은 미제 사건들이 발생하고 있고, 이러한 현실에서 탐정의 필요성은 계속 논의되고 있다. 탐정을 통한 사실관계 조사는 국민들이 실제적 진실에 더 가까이 다가갈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어 탐정의 순기능을 강화시키고 있다(장정범, 2014)[11].

특히, 실종아동을 찾는 일이나 학교폭력, 회사기밀 누출에 있어서는 사설탐정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고 그 긍정적인 측면은 탐정의 공익적 지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는 아직 탐정 입법의 전 단계로 법제화가 되어 있지 않아 외국에 비해 탐정의 활동영역이나 범위에서 많은 제한을 받고 있어, 탐정이 치안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고 국민의 권리 보호에 기여하기 어려운 상황이다(김항겸, 2011)[12].

미국의 캘리포니아주나 독일, 스페인과 같은 선진국에서는 탐정이 공인탐정(CPI; Certificated Private

Investigator)으로 불리고 있고, 정부로부터 공식적인 직업으로도 인정받고 있다. 선진국의 이러한 탐정에 대한 인정은 민간탐정뿐만 아니라 공익탐정의 역할까지 톡톡히 해 낼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되고 있다(안상원, 2021)[13].

이 중 가장 활발한 탐정 활동을 하고 있는 미국과 호주 탐정의 공익적 지원업무를 보면, 먼저 미국의 P.D.(Private Detective : 범죄조사 전문탐정)는 사기, 배임, 횡령 등, 지능범죄 수사, 불법 자금이나 은닉재산 추적, 수배자나 해외 도주자 검거 등으로 인한 재판에 필요한 정보제공을 한다. L.I.(Legal Investigator : 법률조사 전문탐정)는 재판의 증인 확보, 재판 관련 증거의 수집, 법률자료 검색 등을 하고 있다. C.I.(Corporate Investigator : 기업 전문탐정)는 기업 관련 정보를 수집하며, F.I.(Financial Investigator : 회계 전문탐정)는 개인 회계장부 및 은닉재산 조사, 신용도조사를 진행한다. 마지막으로 S.I.(Security Investigator:경비 보안 탐정)는 백화점 또는 할인점, 대형마트 등에서 보안, 경비, 절도 예방 등을 담당하고 있다(이도현, 2020)[14].

호주의 대표적인 예로 Northern Territory 주의 탐정법인들을 들 수 있다. 주에서 관리하는 여러 탐정 법인들은 채권의 회수 또는 독촉, 대금 불 입금의 상품 회수 또는 그 소재의 확인이나 증거수집이 필요한 소송업무를 담당한다. 또한, 다른 사람을 대신하여 실종자를 찾는 업무, 법원의 명령으로 판결의 집행이나 법적 절차를 집행하는 업무, 또는 사업이나 직업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거나 수집하는 탐정 업무 등의 일을 한다.

미국, 호주 외의 다른 여러 선진국가에서도 탐정의 업무로 개인의 소재나 활동영역에서 정보수집, 사고·분실, 각종 도난 등과 관련된 조사에 대한 정보수집의 업무를 하고 있고, 이러한 정보는 소송에서 증거자료로 쓸 수 있도록 허용되고 있기에 탐정의 공익적 지원 업무는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공도환, 2007)[15].

우리나라는 현재 탐정 업무로 ‘사람의 생사나 소재 탐지’를 주로 하는 소재 탐정, ‘교통사고나 화재’ 등에서 증거수집이나 각종 사고 목격자 확보를 위해 활동하는 교통사고 탐정, ‘산업 분야의 증거수집’을 주로 하는 산업 분야 탐정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 중 활동 분야가 다양한 산업 분야로 지적재산권, 상표권, 보험사기, 의료분쟁 등에서 활동하는 산업스파이 전문탐정,

‘도난 물건이나 은닉자산 등의 소재 파악’을 하는 재산 추적 탐정, ‘(개인정보보호 범위 안에서) 기업이 의뢰한 상대기업이나 종업원에 대한 신용도나 신원조사’ 등의 자료를 제공하는 평판 전문탐정 등 더 다양화되어 발전하고 연구되고 있는 실정이다(남성현, 2011)[16].

위에서 열거한 국내의 탐정의 업무는 모두 공익이 우선되는 탐정의 역할로서 그 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 이러한 다양한 탐정의 공익적 역할 중에서 지적재산권 탐정은 현재 다른 어떤 분야보다 인터넷을 통해 빠르게 확산되는 사이버 지능범죄의 공권력 보완 대책으로 많은 활약이 기대되는 분야이다(한국저작권보호원, 2022)[17]. 따라서 아래 내용에서는 지적재산권 분야로서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한 탐정의 공익적 지원의 역할을 알아보고자 먼저 음악저작권의 개념과 유형을 알아보고자 한다.

3. 선행연구

3.1 저작권의 개념

저작권(Copyright)이란 인간의 감정과 사상을 표현한 창작물인 저작물에 대한 독점적 권리로서(저작권법 제4조) 미술, 영화, 음악, 시, 연극, 컴퓨터프로그램, 소설 등과 같은 ‘저작물’에 대해 창작활동에 대한 저작자의 권리를 말한다.

저작권은 본인의 ‘아이디어(Idea)’에 관한 ‘표현형식’의 권리뿐 아니라 표현 자체를 보호한다는 데에도 그 의미가 있다(이경준, 2014)[18]. 저작권은 문학과 예술분야에 문화발전을 도모하고 창의적인 창작활동을 권장하고자 하는 데 원래의 목적과 의의가 있지만, 좀 더 본래적인 의미는 경제시장에서의 창작활동으로 인한 재정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는 것이라 할 수 있다(허환, 2017)[19].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만들어진 저작권법(著作権法)은 저작자의 권리와 이에 관계되는 권리의 보호와 저작물의 올바른 이용을 도모함으로써 문화에 관련된 산업분야의 발전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저작권법 제1조). 이에 따라서 저작자가 가지는 저작인접권, 저작인격권과 저작재산권의 이익에 침해하지 않고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저작재산권에는 제한이 있다. 이러한 저작권법 내에서 음악을 창작한 저작자와 음악을

연주하거나 노래하는 실연자, 그리고 음반 제작자로서 음반을 제작 및 기획하는데 보호를 받을 권리가 음악저작권이라고 할 수 있다(김효란, 황은영, 2022)[20].

3.2 음악저작권의 유형

‘음(音)’에 의하여 표현되는 음악저작물은 가곡, 오페라 아리아(Aria), 가요 등과 같이 가사가 동반되는 경우 그 가사까지도 음악저작물의 일부로 지정하고 있다. 저작권법에 명시되어 있는 음악저작권은 작곡가, 작사가, 음반제작자가 갖는 음악저작물의 권리를 말한다.

음악저작권은 크게 세 가지 형태로 나누어진다. 그 첫 번째 유형으로는 저작인격권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자신이 창작한 저작물에 관해 저작자의 인격적, 정신적 권리를 말한다. 여기에는 공표권, 동일성유지권, 성명표시권이 포함된다. 두 번째 유형으로는 저작재산권을 들 수 있다. 이것은 저작물을 이용하는 경우에 생기는 경제적 이익을 보호하는 권리로서 여기에는 배포권, 복제권, 공연권, 전시권, 공중송신권, 대여권,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이 포함되어 있다. 마지막 유형으로 저작인접권을 들 수 있다. 이것은 노래를 가창하거나 음반을 제작하는 제작자 및 연주하는 실연자, 방송업을 하는 자로서 저작물을 전달 또는 표현하는 권리이다(지예진, 2008)[21].

이 세 가지 유형 모두 저작권법 보호를 받고 있다. 그러나 이 유형들에서 침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음악의 창작성을 보장하고 문화예술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 보상 되어져야 하는 음악저작권 저작료와 사용료에 대한 상당한 보상은 현실적으로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최혜경, 2022)[22]. 이러한 상황을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아래에서는 음악저작권 침해실태와 보호기관의 제도운영 및 현황을 분석하였다.

4. 음악저작권 침해실태와 보호기관의

제도운영 및 현황

4.1 음악저작권 침해실태

우리나라는 2000년대 들어 P2P 관련 기술의 진화로 새로운 형태의 공유형 웹하드 같은 인터넷서비스들이 등장하면서 서비스제공자들과 저작권들과의 법적 분쟁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유는 온라인 환경에서 대부분

저작권으로 보호되어야 할 저작물들이 이용자들의 무분별한 공유 행위로 인해 그 가치에 있어서 저작권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온라인에서의 불법 음원 유통은 1대 다(多)의 방식으로 빠르고 안정적으로 콘텐츠를 공유할 수 있는 토렌트와 유튜브 내 업로드(Up-Load) 되어 있는 콘텐츠를 활용한 스트림 리핑, 불법 스트리밍 앱 등이 있다. 오프라인상의 불법 음반 유통은 주로 고속도로 휴게소, 전통시장, 노점상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오프라인 불법유통은 조금씩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여전히 행해지고 있는 상황이다(조형찬, 2015)[23].

이러한 음악저작권 침해는 재정적인 법적 분쟁으로 이어지고 있고, 음악 시장의 70% 이상이 불법일 것이라고 추정할 정도로 그 불법행위는 매우 심각한 상황이다(스포츠경향, 2022)[24]. 침해율을 보면, 음악 콘텐츠가 2019년 523건에서 2021년 1만 6,720건으로 2년 만에 약 32배 증가로 문화콘텐츠 중 가장 높았고 삭제율은 반대로 27.9%로 제일 낮았다(문화체육관광부, 2022)[25].

음악저작권 침해의 대표적인 유형에서 온라인 불법 복제물 이용률은 음악콘텐츠 이용자 10명 중 7명 이상이 이용했을 정도로 77.6%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한국음악저작권협회, 2022)[26]. 온라인상에서 가장 불법 침해율이 높은 스트림 리핑은 그 이용률이 "2013년 67만 6000건이었던 것이 2021년에는 70만 6000건으로 늘었고, 이것은 불법 스트리밍(불법 디지털 송신 서비스)을 통한 저작권 침해로 방송사 전체로는 해마다 1조 5000억 원이 넘는 피해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저작물을 저작권자의 이용허락 없이 이용하는 복제권은 전송권 침해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불법다운로드를 훨씬 앞지르고 있다(한국음악저작권협회, 2022)[27].

이러한 스트림 리핑은 음반 판매를 제치고 글로벌 음원 판매시장을 주도하는 현시점에서 음악저작권 침해로 인한 가장 큰 경제적인 손실의 원인이 되고 있다. 2021년 K-콘텐츠 온라인 불법유통으로 인터넷 주소 삭제요청 건수는 30만 554건으로 이것은 2015년 1만 699건에서 6년 사이 약 30배 증가한 수치이다. 현황 파악이 어려운 온라인 불법콘텐츠 유통은 개별사업자들이 대응하는데 한계가 있어 국가 차원의 체계적 대응이 좀 더 필요한 상황이다(문화체육관광부 2022)[28]. 이러한 다양한 음악저작권 침해로 인해 올해 국내 유명 음악창작자 중 약

3,500명이 지난 과학기술 정보통신부와 방송통신위원회에 방송사의 무단 음악사용에 대한 조사와 제재를 요청하는 탄원서를 제출했다(한국음악저작권협회, 2022)[29].

위에서 보듯 우리나라의 온라인상의 저작권 불법침해는 매우 심각하다고 볼 수 있다. 저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진 저작권법 안에서 저작권 보호는 창의적인 음악콘텐츠산업 발전의 가장 기초단계이다. 이를 저해하는 불법행위들을 합법적인 콘텐츠 시장으로 전환 시키는 노력이 먼저 필요하겠다. 이러한 노력은 밝은 콘텐츠 산업의 미래 생산활동의 효과로 이어져 새로운 일자리 창출에도 도움을 주는 산업의 선순환을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음악 콘텐츠시장의 성공적인 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권력의 보완인력이 꼭 필요하다 하겠다.

4.2 보호기관의 제도운영 및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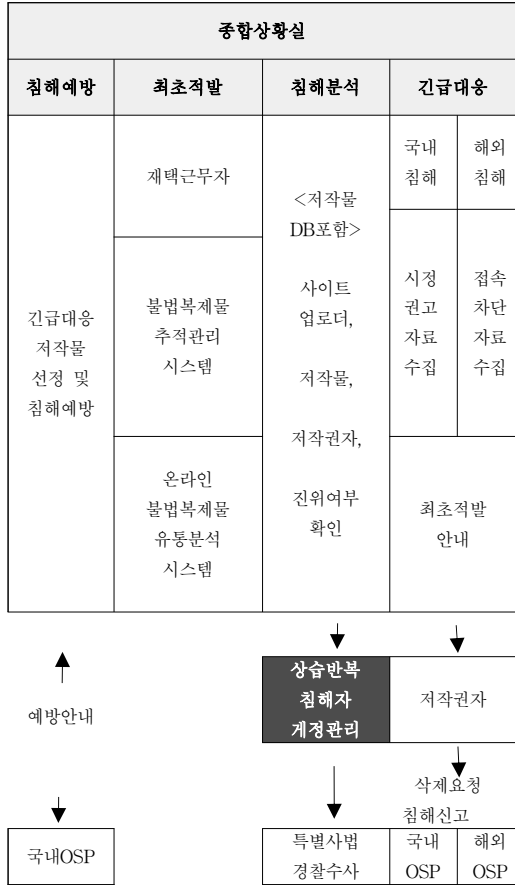
4.2.1 한국저작권보호원

한국저작권보호원은 문화체육관광부 산하기관으로서 고소 고발 이전에 사건 예방을 위한 보호 업무를 수행한다. 여기서는 예전과 달리 인터넷상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불법 복제물 등의 증가로 이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모니터링을 전문으로 하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사전 모니터링으로 발견한 불법물에 한하여 심의위원회에서 심사를 한 후 심의를 거쳐 서비스제공자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 하고 있다. <표 1>은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전국 권역별 단속체계도이다.

조치의 내용을 보면, 저작권법 제133조의3 제1항으로 무단 불법 복제물 전송자에 대한 경고로서 불법 복제물 등의 삭제 또는 반복적으로 불법 복제물 등을 전송할 경우 전송 중단과 전송자의 계정을 정지시키고 있다.

<표 1> 한국저작권보호원의 전국 권역별 단속체계도



<출처> 한국저작권보호원 kcopa.saramin.co.kr

사법기관에 단속업무를 지원할 수 있는 한국저작권 보호원은 현재 저작권 침해환경 분석을 위한 협조체계로서 관계기관과의 일원화를 통하여 저작권 침해대응 컨트롤타워 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며 온·오프라인 상에서 꾸준히 상시 모니터링을 하고 있다.

한국저작권보호원에서는 온라인 재택 모니터링단 운영을 통해 국내·외 사이트에 대한 불법 복제물 모니터링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온라인 재택모니터링을 진행하는 인력의 대상은 취업 취약계층(장애인, 경력단절 여성, 다문화가족, 차상위계층, 미취업청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고 재계약이 불가한 10개월 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재택 모니터링 근로자는 약 340명으로 온라인대응팀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모니터링단의 주 업무는 ①

온라인 불법 복제물 모니터링 및 신고, ② 보호원 모니터링시스템을 활용한 채증 자료생성, ③ 온라인 불법 복제물 정보, 기타 온라인 불법 복제물 유통방지 및 침해 예방업무 등을 주간, 야간, 심야로 나누어 진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한 인터넷상의 불법 단속과 더불어 현장 단속 활동도 하고 있다. 현장 불법 단속 인력은 만 60세 이상 고령층의 일반 시민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장단속에 필요한 소정의 교육을 받고 이 단속반들로 인한 신고로 경찰의 단속업무가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와 저작권 보호기관의 대응과 더불어 저작권 보호를 위한 수 십년 동안의 수정과 보완의 과정에도 불구하고 음악저작권 모방의 용이함과 저작권 등록의 허술함, 그리고 다양하고 광범위해진 침해사건의 급증 등으로 인해 저작권 보호에 대한 대책 논의는 중요한 과제로 꾸준히 검토되고 있다(한국저작권보호원, 2022)[30].

4.2.2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문화체육관광부 유관 기관으로서 저작물의 신탁 관리를 맡고 있다. 여기에서는 저작물 등록신청과 명세서 및 음반, DVD 등의 자료를 받아 서류작성 형식의 이상 유무만을 판단하여 저작권을 등록하고 있다.

음악저작권은 창작성이 중요하지만 창작성의 유무는 등록심사과정에서 제외하는 소위 무심사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등록에 있어서는 대리인도 가능하다. 이러한 저작권 등록의 편리성은 저작권 침해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또한 신탁관리업체들의 대행으로 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음악저작물 관리가 현재 신탁관리업체들의 과도하고 배타적인 업무 형태 때문에 신탁한 저작권자마저 이용자로 전락시키는 폐쇄적인 구조로 그 문제가 야기되고 있다(김영인, 2020)[3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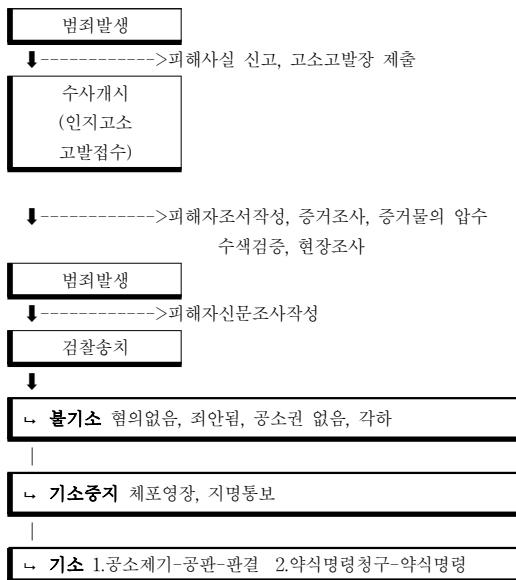
특히, 분배에 있어서 과도한 수수료와 불투명함은 더 많은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는데 이러한 현행 저작권 제도에 대한 문제점의 대안으로 정부는 ECL(집중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있다. 이 제도는 창작자가 명시적인 거절을 하지 않는 이상 장관이 모든 저작물에 대해 지정된 저작권 집중관리단체 이용허락에 대한 권한을 주는 것이다. 음악을 이용한 사업자들이 편리하고 안전하고

신속하게 대량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 창작자에게 좀 더 혜택을 주기 위한 제도로 그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김기성, 2021)[32].

4.2.3 경찰

재산범죄로 분류되는 음악저작권 침해사건은 경찰청 내의 사이버수사대, 경제팀, 지능범죄수사팀에서 주로 진담하고 있다. 범죄행위를 사전에 인지하여 수사기관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하기가 어려운 지적 재산범죄의 특성으로 피해 발생 사실이 확인되더라도 처벌과정에서도 인터넷상으로 계속 늘어나는 피해자와 피해 금액 보상에 대한 처리 과정은 경찰업무에 큰 부담을 주고 있다. <그림1>은 현재 재산범죄 행위에 대한 수사절차이다.

<그림1>



경찰 수사절차 <출처> 전라북도지방경찰청

최근 코로나 19로 인한 문화 소비가 비대면 방식으로 변화하면서 음악, 웹툰, 영화 등의 다양한 한류 콘텐츠가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시장에 진출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고 있다. 이에 문체부는 경찰청, 인터넷과 힘을 모아 온라인상 저작물 불법유통에 대해 적극적으로 공조 수사해 전 세계 콘텐츠의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한류를 더욱 확산하고자 하는 의지를 밝히고 있다. 그러나

경찰의 현재 인력만으로는 이러한 수사 사건들을 해결하기에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실정이기도 하다.(www.police.go.kr)[33].

저작권법 형사 처벌은 제140조에 따라 친고죄(親告罪)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아직은 피해보상이 고소 고발 이후의 사건처리에서 그 처리에 대한 피해보상이 그냥 잘, 잘못을 따지는 응보적 차원의 사건 해결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피해보상에 필요한 회복적 차원의 사건 해결이 더 강구되어야 한다(하민경, 2010)[34]. 보상에 있어서는 피해 사실의 증거확보가 제일 중요하다. 형사 소송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는 합리적이고 합당한 자료수집 채증에서부터 애로사항에 부딪치게 된다. 증거 인멸이 수시로 일어나는 지적재산범죄의 증거수집은 피해자 혼자 감당하기에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수사기관은 편향적 수사가 아닌 중립적 수사가 이루어져야 하는 이유로 피해자에게 증거수집이나 확보에 대한 방향을 제시해 줄 수가 없다. 빠르고 합리적 증거수집을 위해서는 사건 내용에 따른 비용부담을 피해자 스스로 안고 변호사나 법무사 등을 찾게 된다. 그러나 재판에 필요한 증거는 오롯이 피해 당사자가 준비해야 할 몫으로 여기에서 사건에 대한 몰입성과 접근성, 전문성, 비용 면에서 좀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사적 기관인 탐정의 도움이 필요해 보인다(김용현, 2015)[35]. 그러나 이러한 재판에 필요한 좀 더 타당하고 합법적인 증거제출을 위해서 법 제도권 안에서 공익적 도움을 줄 수 있는 탐정이 탐정의 비 입법화로 인해 탐정의 긍정적인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4.2.4 한국저작권위원회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인 한국저작권위원회는 저작물의 바른 이용질서 확립과 저작권 보호, 저작권 산업 분야의 발전을 위해 설립된 저작권 전문기관이다. 여기서는 저작권법에 의거하여 저작권에 관한 일련의 사항을 심의하고, 저작권 분쟁의 현명한 조정을 위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사건이 경찰로 넘어가기 이전의 피해자와 피의자 간의 원만한 사건 해결을 우선으로 하며 법적 분쟁이 시작되면 저작권위원회에서는 분쟁 조정을 위해 법조계, 학계, 산업을 대표하는 1인에서 3인의 전문가들로 구성된 조정부에서 신속, 저렴하고 원만한 화해를 유도하는

대안적 분쟁 해결 제도(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방식을 활용한 분쟁 조정업무를 주로 하고 있다(한국저작권위원회, 2022)[36].

5.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한 공익적 지원자로서 탐정 산업의 역할

첫째,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한 전문 모니터링 역할은 탐정이 할 수 있는 공익적 역할이라 할 수 있는데 이 분야는 탐정 산업의 한 분야로서 그 역할을 연결 지을 수 있겠다. 현재 우리나라 방송국 내에서는 음악 송신에 관련한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아직은 방송용 모니터링으로 상용화된 시스템은 미약한 실정이라서 해외의 기술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한국저작권보호원(2022)에 따르면, “저작권보호원의 온라인 재택모니터링을 진행하는 인력의 대상은 취업 취약계층(장애인, 경력 단절 여성, 다문화가족, 차상위계층, 미취업청년)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간제 근로자로 채용하고 있고 계약약이 불가능한 10개월 계약으로 진행되고 있다. 2022년을 기준으로 재택모니터링 근로자는 약 340명으로 온라인 대응팀과 함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여기에 좀 더 전문성을 갖춘 탐정인력은 앞으로 저작권 탐정 산업의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겠다.

미국의 경우, 전문탐정 기업들이 음악콘텐츠 저작자 또는 법률대리인(변호사, 로펌 등)과의 협업을 통해서 상시 음악저작물과 관련한 불법행위를 감시하고 있으며, 이를 위한 한 침해자들에 대한 형사고발이나 변호사를 통한 손해배상의 청구 등을 대리하고 있다. 음악저작권 이외의 다른 소프트웨어 저작물이나 저작권이 인정되는 내용에 대해서도 위탁계약 또는 대리 계약을 통한 침해 행위 감시에 나서고 있다.

일본 역시도 이와 관련한 변호사업계와 탐정업계의 협업 관계가 존재하며, 우리나라도 음악저작권 보호를 위한 정부 기관의 업무에만 기대는 것은 무리라고 판단된다.(박성일, 2018)[37]. 우리나라의 음악콘텐츠에 대한 소비가 국내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해외 탐정업체와의 협업을 통한 접근 방식도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음악저작물의 저작권 침해에 대한 감시는 사회적 직업 창

출의 개념이나 직업복지의 개념으로 진행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는 복지적 효과는 있을 수 있지만 전문적인 모니터링과 단속이라는 측면에서는 그 효과성이 떨어질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기존의 시스템과 함께 별도의 탐정업자 또는 탐정 기업과의 협업 관계 조성을 통한 체계적이고 지속적이며, 전문적인 음악저작권 침해에 대한 전문 모니터링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하겠다.

둘째, 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법률소송과정에서의 전문 조력자의 역할이 탐정업자와 탐정 기업을 통해 가능하다. 여기에는 두 가지 역할을 들 수 있는데, 하나는 증거의 확보(온, 오프라인)이고 다른 하나는 피해 사실 조사이다. 탐정제도에 관한 국회의 입법 과정이 진행된다면, 이 두 역할을 하는데 있어서 효율성이 배가될 것으로 전망된다. 현재의 탐정 업무로는 미아, 가출인, 실종자, 소재 불명인, 불법 행위자에 대한 소재파악과 이들에 관련된 사실조사, 도난, 분실, 도피자신의 추적 및 그 소재확인과 관련된 사실조사, 의뢰인의 권리 보호 및 피해 사실과 관련된 사실조사 등으로 탐정의 정의에 온전히 부합하는 순수 사실관계 확인조사 및 입증자료 수집만을 하고 있다(탁희성, 2018)[38].

공인 탐정과 일반 탐정으로 나뉘어 운영되고 있는 미국에서는 탐정이 법률영역에서 소송절차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증거조사 및 수집 등의 업무를 수행함으로써 법적 판단과 소송수행에 있어 변호사에게 중요한 동반자이자 조력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정민계·강동욱, 2022)[39]. 또한, 탐정이 음악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조사능력을 갖추기 위해 법률 능력을 키우고 있고 음악 산업 분야 전반에 대한 전문지식을 넘어 음악 비즈니스 분석을 포함하는 등의 피해 사실조사를 위해 기술적인 개발 분야를 계속 확장하고 있다(Michael King, 2021)[40]. 우리나라도 앞으로 탐정제도 입법화를 통해서 음악저작권 침해와 관련한 소송과정에서의 전문조력자이자 지원자로서 그 역할이 기대되는 상황이다.

셋째, 직접적인 형사재판 및 민사재판과 관련한 증언 및 증인 확보를 위한 법률 지원자로서의 역할이다. 미국의 경우 변호사는 탐정의 조력이나 지원 없이는 효율적인 재판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음악저작권 관련 법률문제를 담당하는 변호사사무실이나 로펌에서 협업 가능한 탐정을 일정 수 확보하고 있다. 조사를 통해 알게 된 피해 사실을 기반으로 탐정이 법정 증인으로

서의 역할을 수행하게 하며, 탐정에 의해 수집된 증거는 법정에서 그 증거능력을 상당 부분 인정받고 있다. 또한 탐정은 변호사처럼 변론의 권한은 없지만 변론업무를 도와줌으로써 간접적으로 소송에 참여하고 있다(함혜연, 2020)[41].

넷째, 음악저작권 침해로 인해 피해자 입은 비계량적 피해 내용의 산정(정신적 피해산정)을 위한 역할이 가능하다(Charles C Thomas, 1984)[42]. 사건 진행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대응과 상대 피고측으로부터 유리한 합의 금액을 조율하는 것을 변호사와의 협업을 통해 미국에서는 진행하고 있다. 정신적 손해배상까지 민사소송으로 모두 청구하기 위해서는 탐정의 사실조사를 기반으로 이를 계량화하는 과정이 필요하며, 비계량적 피해 산정을 탐정을 통해 진행함으로써 피해자는 다른 부분에 대한 집중이 가능하다.

다섯째, 오프라인상에서의 발생하는 음악저작권 관련 피해를 실제 현장에서 조사하고 그 자료를 수집하는 역할을 탐정이 수행할 수 있다. 오프라인상 불법 복제물은 실버 감시원(12명)을 활용하고 있으며, 2020년을 기준으로 서울, 수도권에서 총 4,056건의 위법사실 확인이 진행되었다(한국저작권보호원, 2020)[43]. 문제는 실버 감시원이 고령의 노인 일자리 사업이기 때문에 감시원들의 현장 출동과 단속능력에는 한계가 존재한다는 점이다. (이채영, 2018)[44]. 따라서 이러한 시스템의 보완책으로서 현장조사 및 전문적인 증거수집 기술을 가진 탐정을 활용하여 음악저작물의 불법적인 침해행위에 대한 현장조사 능력을 강화하는 제도적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이상에서 제시한 탐정의 5가지 공익적 기능은 앞으로 저작권 분야에서 충분한 긍정적 역할을 발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음악저작권 탐정의 더욱 체계적인 교육을 통한 기능 강화는 음악저작권 침해 예방은 물론 침해 분쟁의 해결에 있어서 탐정 산업의 신 직업분야로 충분히 발전할 수 있을 거라 생각된다.

앞으로의 탐정 산업 활성화를 위해서는 우선 탐정 입법화가 빠른 시일안에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다양한 분야에서 탐정과 관련된 전문지식 수준 향상을 위한 교육이 더욱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본다.

6. 결론

지금까지 국내에서 연구된 탐정학에 관한 논문은 탐정 업무에 대한 긍정적인 의견으로 경찰과 검찰의 업무감소와 권리침해를 입은 국민들의 요구에 맞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들로 탐정의 입법화를 주장하는 내용들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

앞으로의 논문은 탐정 입법화의 기대로 탐정의 공익적 지원이 탐정의 전문화로 이어져 퇴직 근로자들의 재취업과 청년실업률을 감소하는 신직업창출로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현재 대학 졸업 후 취업의 문턱이 높아 직장을 찾기 어려운 청년들에게 또 100세 시대를 준비하는 60세에 퇴직한 많은 근로자들에게는 경제활동의 연장선으로 경제적 파급효과의 새로운 활력소가 될 것이다. 이를 위한 탐정 제도의 입법화는 다시 한번 강조해도 무리가 아닐 것이다.

앞으로 입법화와 더불어 탐정 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전문탐정의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이러한 취지로 이 연구에서는 음악저작권 보호라는 공익적 차원에서 전문 탐정 역할을 위한 다양한 제도적 방안이나 기술적 방법들을 모색해 보았다. 선진국에서 음악저작권을 포함한 다양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해 탐정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모습을 우리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아 앞으로 우리나라도 문화 공화국이라는 칭호에 맞게 탐정을 활용한 음악저작권 보호가 탐정 산업 발전을 성장시키는데 좋은 토대가 되길 기대해 본다.

References

- [1] 최혜경(2022). “음악저작권 침해의 법적 문제 재구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 김용현(2015). “민간조사제도 도입에 따른 지적재산보호 활용방안”,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4권 제1호, 한국민간경비학회.
- [3] 조상현(2019). “공인탐정에 관한 인식 연구”; 일반경비원 신입교육대상자를 중심으로, 한국민간경비학회보, 제18권 제4호, 한국민간경비학회.
- [4] 하금석(2022). “탐정업 관리제도 도입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5] 이도현(2020). “탐정의 업무범위에 관한 연구”,

-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6] 노건거(2019). “탐정제도 도입의 주요 쟁점 연구”, 경기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7] 강영숙(2008). “외국의 탐정제도와 한국의 공인탐정제도의 사회적 필요성 수사연구”, 통권 제210호, 수사연구사.
- [8] 황요완(2017). “공인탐정제도 도입시 문제점과 해결방안에 관한 입법론적 연구”, 동아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9] 김영길(2021). “탐정제도의 합리적 도입 및 운영방안에 관한 연구”, 한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0] 박종화(2011). “탐정제도의 사회적 필요성과 도입에 관한 연구”, 영남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11] 장정범(2015). “델파이(Delphi)와 IPA 분석을 통한 민간조사원의 업무범위 설정에 관한 연구”; 연구자 관계 분석, 용인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12] 김향겸(2011). “민간조사업 도입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인식조사 연구자 관계분석”,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13] 안상원(2021). “외국 탐정제도의 고찰과 시사점”,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
- [14] 이도현(2020). “탐정의 업무범위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5] 공도환(2008). “한국에서의 탐정제도의 필요성과 탐정의 역할 및 업무범위에 관한 연구”, 연세대학교 법무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6] 남성현(2011). “인터넷상의 저작권 침해와 OSP에 대한 단계적 대응제도 연구”, 성균관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7] 한국저작권보호원(2022). 홈페이지 소개내용.
- [18] 이경준(2014). “음악산업의 구조변동에 따른 음악저작권 쟁점 연구”, 한국의국어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19] 허 환(2017). “음원권리자의 저작권 보호와 창작활성화를 위한 음원 수익배분에 관한 연구”, 상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20] 김효란, 황은영(2022). “음악치료사의 입장에서 음악저작물 이용실태와 음악저작권에 대한 인식 및 준수행동 조사”, 한국예술교육학회.
- [21] 지예진(2008). “음악저작권 개선방안 연구; 한·미·일 음악저작권 판결사례 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한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2] 최혜경(2022). “음악저작권 침해의 법적 문제 제구성”,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23] 조형찬(2015). “저작권 집중관리제도 등의 개선을 통한 음악 저작권 보호”, 중앙대학교 법학연구원 문화미디어 엔터테인먼트법연구소.
- [24] 스포츠경향(2022).
- [25] 문화체육관광부(2022). 홈페이지 소개내용.
- [26] 한국음악저작권협회(2022). 한국음악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27] 한국음악저작권협회(2022). 한국음악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28] 문화체육관광부(2022). 홈페이지 소개내용.
- [29] 한국음악저작권협회(2022). 한국음악저작권보호연차보고서.
- [30] 한국저작권보호원(2022). 홈페이지 소개내용.
- [31] 김영인(2020). “저작권 집중관리제도의 현황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명지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32] 김기성(2021). “음악저작권 제도의 비판적 연구”, 성공회대학교 문화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33] www.police.go.kr(2022).
- [34] 하민경(2010). “음악저작권 침해에 대한 형사책임”,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5] 김용현(2022). “국내 민간조사 연구의 실태와 개선방안”, 문화와 융합, 제44권 제3호, 한국문화융합학회.
- [36] 한국저작권위원회(2022). 홈페이지 소개내용.
- [37] 박성일(2018). “방송음악 저작권료의 효과적인 분배를 위한 모니터링 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세종대학교 융합예술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38] 탁희성(2018). “민간조사제도 도입 논의에 관한 비판적 검토와 입법적 제언”,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 [39] 정민계·강동욱(2022). “차입매수와 탐정의 역할 확대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소.
- [40] Michael King(2021). “Private Investigation into Economic Crime”; Regulation of Multidisciplinary a Field, Journal of Applied Security Research.
- [41] 함혜연(2020). “공인탐정의 법적 지위에 관한 고찰”; 변호사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한국공안행정학회.
- [42] Rush, Donald A. and Siljander, Raymond(1984).

"Fundamentals of Civil and Private Investigation, Springfield" : Charles C. Thomas Research.

- [43] 한국저작권보호원(2022). 홈페이지 소개내용.
- [44] 이채영(2018). "저작권 집중관리단체의 음악저작권 행사와 공정거래법상 문제점", 고려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논문.

김 미 옥 (Kim, Mi Ok)



- 2015년 09월 ~ 현재 : 한국 범죄학 연구소 연구위원
- 2023년 02월 : 가톨릭대학교 일반대학원 행정학과 탐정학 전공 박사과정 수료 예정
- 2017년 08월 : 숭실대학교 교육대학원 졸업 (교육학 석사)
- 관심분야 : 탐정학, 지적재산권, 문화산업 보호
- E-Mail : live3001@gmail.com

윤 소 빈 (Yun, Sou Bin)



- 2019년 ~ 현재 : 엘리스 컨설팅 HR 대표자문위원
- 2023년 2월 : 숭실대학교 대학원 IT 정책경영학과 박사과정 수료 예정
- 2019년 08월 : 숭실대학교 경영대학원 졸업(경영학 석사)
- 관심분야 : 감성지능, 메타버스, AI 시스템
- E-Mail : trisha.yun@gmail.com

염 건 령 (Yeom, Keon Ryeong)



- 2022년 09월 ~ 현재 :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탐정학 전공 교수
- 2015년 03월 ~ 현재 : 한국 범죄학연구소 소장
- 2011년 08월 : 국제문화대학원대학교 청소년지도학과(교육학 박사)
- 관심분야 : 행정학, 사회학, 통계
- E-Mail : kicl2001@naver.com